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2020083 판결 [보증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2020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843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2.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84306 판결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43,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20. 5.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9,14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5.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7,64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5.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538,582,469원 및 그중

1) 409,441,785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4.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29,140,684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485,940,079원 및 그중

1) 356,799,395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4.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29,140,684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형통상구분기 2호기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지정예비품 미납분, 시운전 불이행분, 기지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총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같이 변경하면서, 기존의 지급보증보험금 청구 외에 하자보증보험금 청구를 추가하여 총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8,843,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만이 대형통상구분기 2호기 부분에 대하여 일부 항소하였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형통상구분기 2호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형통상구분기 납품 경위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대형통상구분기(우편물의 우편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자동 분류하는 설비)를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2012. 9. 5.자 및 2013. 1. 24.자 계약에 따른 대형 통상구분기 1호기(이하 '이 사건 1호기'라 한다)를 C우편집중국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하고 2016. 5. 31. 인계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1호기 외에 추가로 대형통상구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이 사건

1호기와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를 2014. 12. 1.자 및 2015. 9. 17.자 계약(계약금액 합계 24억 5,000만 원)에 따라 2016. 12. 27. C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2017. 1. 2.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물품계약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합격 시까지 그 성능을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나. 피고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피고 B은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위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의 위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위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5. 17. 보험계약내용이 최종변경되어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액은 이 사건 2호기 총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한 367,500,000원, 보증기간은 2016. 12. 26.부터 2017. 8. 31.까지이고, 하자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증금액은 이 사건 2호기 총 계약금액의 5%에 상당한 122,500,000원, 보증기간은 2016. 12. 26.부터 2019. 8. 31.까지이다.

다. 원고의 시운전 성능보완 요청 경위

1)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2호기에 대하여 시운전 도중 발생하는 하자에 관하여 2017. 1. 12.자 1차 시운전 성능보완 요청에 따른 2017. 4. 28.자 1차 시운전 성능보완 완료 처리 이후 2017. 5. 11.자로 2차 시운전 성능보완 요청을 하였다(시운전 기간은 당초 2017. 5. 31.까지에서 2017.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2호기는 피고 B이 2017. 6.경까지 보수를 한 후에도 계속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 B은 2017. 6. 29. 추가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원고의 성능보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2017. 7. 3. 열린 최종 청문회에 불참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는 2017. 8. 11. 피고 A에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A은 피고 B이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며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2호기의 시운전 도중 성능 미비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성능보증의무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387,54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위 손해액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금과 지급보증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보증금액 중 20,040,129원 범위 내)으로서 위 387,54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 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호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계약에서 예정한 성능을 구비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각 해당란 기재 보수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구분	성능보완 필요 사항	보수비(원)
1	구분기	슈트 만재 시 현장에서 만재 확인 곤란	4,260,867
2		슈트 만재 센서 감지 시 램프 미점멸	
3		구분기 트랙 가동시간 과다	7,993,633
4		Select S/W 명판 미부착	110,713
5		Select S/W 기능 하자	1,976,898
6	컨베이어	컨베이어 과부하 문제	22,653,684
7		인버터 에러 발생	
8		신축물 개폐 시 우편물 낀	
9		C/V간 벨트 사이 연결부 마감	
10		인덕션-벨트 사이 우편물 낀	323,789
11		C/V간 벨트와 벨트 사이 단차로 인한 우편물 낀	6,729,026
12		A존에서 B존으로의 물량 과다 이송 문제(A존 리턴루프 미설치)	8,184,178
13	PLC	A존→B존 물량 과다 이송	17,664,678
14		신축문 제어 조정	
15		A3-2 수작업 공급 C/V의 PLC 미연결	
16		A존 및 B존 인덕션으로의 공급 불량	28,320,481
17		A6→A7 C/V 우편물 과다 이송	3,459,572
18		티퍼작동 오류	1,482,674
19	KaOS	조회화면의 장비선택시 '전체장비' 선택 목록단추 없음	4,942,245
20	기타	파렛트 잠금장치 문제	6,835,827
21		작업자 작업 시 안전 문제	222,436
22		PLC 프로그램 설계(사용권) 필요	127,698,900
23		준공도면 제출 필요	2,861,392
24		인덕션 타건기에서의 통신장애	3,416,552

나)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감정인 D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2호기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의 오류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있어 위 표 순번 5, 10, 11, 16, 17, 18, 20, 24 항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경위, 원고의 위 하자들에 관한 조사와 보수 요구 및 피고 B의 대응 경위와 내역, 위 감정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들에 관하여 모두 이 사건 2호기 물품계약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표 순번 12 항목과 관련하여, 비록 'PLC'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A존'에서 'B존'으로의 물량 과다 이송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2호기 물품계약상 위 내용에 편입된 규격서(제안요청서, 갑 제2호증의 11)의 'II 사업추진 세부내용'의 '6 인입장치' 중 '6.6 컨베이어' 부분에 'A존 티퍼로부터 공급된 우편물은 Loop 방식의 컨베이어를 통하여 재순환할 수 있어야 하고, Loop 방식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충분한 버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B존의 컨베이어까지 연결컨베이어를 연결·설치하여 B존의 인입부로 우편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A존과 B존 연계방식 순환(Loop) 컨베이어 설치를 정해 두었는데, 이 사건 2호기는 위 내용대로 설치되지 않아 물품계약에서 예정한 성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각 증거에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시운전 도중 이 사건 2호기가 고장나자 2017. 8. 22. E 주식회사에 고장 원인 파악 및 조치를 위한 인건비와 'Sensor Box' 교체 및 수리를 위해 9,350,000원을 지출하였고[위 1)의 가)항 표 기재 해당 성능보완 필요사항과 중복되지 않음], 이 사건 2호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구형 1호기를 대체가동하느라 인건비 9,261,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각 증거에 갑 제4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2호기 물품계약상 피고 B은 90일의 시운전기간 중 기술자 2명 이상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장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우편물 운영 시험에서 미결된 사항들이 완료되어 최종 인계될 때까지 구분기 제어 S/W 엔지니어를 반드시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정해져 있기에 위 규격서 'II 사업추진 세부내용'의 '15 승인시험 (A/T) 및 실제 우편물 운영시험(C/T)' 중 15.2.의 가)항 및 15.3.항], 원고는 피고 B에 시운전비용으로 12,440,527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12. 28.부터

2017. 1. 12.까지 16일간, 2017. 4. 28.부터 2017. 5. 11.까지 14일간 이상 합계 30일간만 시운전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계속된 성능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미 90일의 시운전기간을 기준으로 지출한 시운전비용 12,440,527원 중 60일의 시운전 미수행분에 상당한 8,293,684원(=12,440,527원×60일/90일,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의 손해[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수를 완료하여 이 사건 2호기의 성능이 모두 보완되더라도 원고는 안정적인 설비의 운영을 위해 시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비용 상당액도 피고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이상 살핀 내용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의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았고,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인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저]5항), 이 사건 2호기의 시운전 합격 시까지 부담하는 성능보증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위 보수비 등 합계액 276,043,129원[= 위 1)의 가)항 249,137,545원 + 위 2)항 9,350,000원 및 9,261,900원 + 위 3)항 8,293,68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정예비품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호기 물품계약에 편입된 위 규격서(제안요청서)의 'II 사업추진 세부 내용' 중 '12. 특수공구 및 예비품' 부분에 정해진 것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2호기의 구분기와 인입 유닛을 충분하 보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특수 공구와 지정 및 소모성 예비품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 B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정예비품 납품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중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순번 2부터 14까지의 해당 가액 합계액은 111,49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이 위와 같이 지정예비품 납품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인해 원고는 위 가액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276,043,129원과 지정예비품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11,497,000원을 합한 387,540,129원 및 그중 (1) 제1심법원에서 청구하였던 부분인 258,399,445원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239,555,782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18,843,663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한 부분인 129,140,684원(=위 가의 2)항 9,350,000원 + 위 가의 3)항 8,293,684원 + 위 나항 111,497,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 A은 피고 B의 이 사건 2호기 시운전 합격 시까지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2호기의 시운전 기간 내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성능 미비 등 하자에 대한 보완을 거부하는 등 성능보증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앞서 3의 가항에서 인정된 손해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보험금 중 위 276,043,129원의 손해액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3의 나항에서 인정된 지정예비품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도 위 지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급보증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시운전조건부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정해진 피고 B의 성능보증의무 즉,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할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위 보험금 지급사유로서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 B의 부도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 B이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시운전이 연기되어 원고가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B이 불응한 경우, 피고 B의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위 계약특수조건 제6조 제5항)이거나 이에 상당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정예비품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2호기 물품계약에서 예정한 성능보증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설령 위 지정예비품 중 앞서 본 피고 B의 성능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물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 B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필요한 보수비는 앞서 인정된 지급보증보험금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예비품 해당 가액을 원고의 손해로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 A에 대하여 앞서 본 하자보증보험의 부보범위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보험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보증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20,040,129원 범위 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보증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 전인 시운전 완료 시까지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지급보증보험과 부보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276,043,129원은 지급보증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모두 보상이 되고, 위 지정예비품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하자보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원고에게

하자보증보험금 지급 대상인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보험금으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의 다항 기재 금액 중 피고 B의 이 사건 2호기 성능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부분인 위 3의

가.의 4)항 기재 276,043,129원 및 그중 (1) 제1심법원에서 청구하였던 부분인 258,399,445원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239,555,782원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18,843,663원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5. 28.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한 부분인 17,643,684원(=9,350,000원+8,293,684원)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각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호기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서 기존에 청구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정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박지연 판사 김선아

별지 표(지정예비품 내역)

순번	규격서 (갑 제2호증의 11 규격서 제54면)		손해 내역				입증 방법
	지정예비품 내역	수량	부품 및 규격	단가	수량	손해액	
1	가) PCB보드	각 조립된 것의 1개	-	-	-	-	주부 관할 업체 견적 후 재출 매정
2	나) 모터 및 크로스 벨트를 포함한 운반요소 유니트 (모터 컨트롤러 포함)	총 5개	크로스벨트 소터 유니트(캐리어)	2,700,000	5	13,500,000	갑 제2호증의 8 내역서 제12면 3-1. 캐리어
3			BLDC Controller	545,860	5	2,729,3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20번
4	다) 키보드 및 모니터	각 형태별 1개	키보드	54,590	1	54,59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2번
5			모니터	23,650	1	23,65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3번
6	라) 구동모터 (구분기, 인입부, 공급컨베이어 등)	각 형태별 1개	Drive Motor(1.5kw)	227,450	1	227,45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4번
7			Drive Motor(2.2kw)	318,430	1	318,43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5번
8			Drive Motor(3.75kw)	500,380	1	500,38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6번
9	마) 주소영역 합지 카메라 (우편번호 및 폭박바코드 판독용)	1대	IPS System (Spare Part)	25,000,000	1	25,000,000	갑 제2호증의 8 내역서 제11면 1-7. IPS System Spare Part
10	바) Cross-Belt	20개	크로스벨트	136,460	20	2,729,2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7번
11	사) 크로스벨트용 모터	20개	소터용 모터	272,930	20	5,458,6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19번
12	아) 크로스벨트용 모터 컨트롤러	20개	소터용 모터 Controller	545,860	20	10,917,2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20번
13	자) 인덕션 및 슈트 등에서 사용되는 통신 유니트	10개	소터용 통신 유니트	272,940	10	2,729,4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21번

순번	규격서 (갑 제2호증의 11 규격서 제54면)		손해 내역				입증 방법
	지정예비품 내역	수량	부품 및 규격	단가	수량	손해액	
14	차) 크로스벨트용 전원장치(픽업 또는 커런트볼록터)	20개	소터용 전원장치	2,365,440	20	47,308,800	갑 제22호증의 3 순번 22번
15	합계					111,497,000	

